

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주요내용

□ 확대 내용

- 지원수준 : (기존) 3/4 → (확대) 90% * 상한액 : 1일 6만 6천원
- 지원대상 : 우선지원대상기업(업종불문)*
 - * 우선지원대상기업 : **제조업 500인 이하**, 건설업 등 300인 이하, 도소매숙박 등 200인 이하
기타 업종 100인 이하
- 적용기간 : 4~6월(휴업·휴직) * 5월부터 지급(4월분 소급 적용)
- 예산확대 : 351억원 → 1004억원(추경) → 5004억원
- 신청방법 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
 - ↳ ①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→ ②상단의 “기업서비스”
→ ③“고용안정장려금” → ④“고용유지지원금”에서 신청 가능

※ 고용부 지급수준 상향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추진

□ 예시 (우선지원대상기업)

사 례	구 분	3월 (75% 지원)	4월 (90% 지원)
월급 200만원인 근로자	휴업수당(A, 70%)	140만원	
	고용유지지원금(B)	105만원	126만원
	기업부담분(A-B)	35만원	14만원 (-21만원)
월급 500만원인 근로자	휴업수당(A, 70%)	350만원	
	고용유지지원금(B)	198만원 (상한액)	198만원 (상한액)
	기업부담분(A-B)	152만원	152만원 (기존동일)
월급 800만원인 근로자	휴업수당(A, 70%)	560만원	
	고용유지지원금(B)	198만원 (상한액)	198만원 (상한액)
	기업부담분(A-B)	362만원	362만원 (기존동일)

※ 상한액(월 198만원)에 의해, 월급여 315만원 이상 근로자는 지원금 변동 없음